

의안번호	제 32/ 호
의결년월일	1995. 12. 28. (제 40 회)

의결 사항	원안 가결
----------	----------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5. 12. 18.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1
------	-----

제출연월일 : 1995. 12. 18.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거류면 용산리 용산1.2구마을은 지난 80년 분동이후 각종 사업 및 행사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어 이장 영향력에 따라 각종 현안 사항등이 현저한 차이로 이로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안정과 마을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전체 주민총회의 결의로 통합을 원하고 있음
- 임난이전에 거류산이 마을북쪽을 막아주고 산어귀에 마을을 이루었다하여 '도산촌'이라 칭하다가 일제시대에 현재'산촌'으로 개칭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에 마을주민들이 구시대적 명칭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코자 송산으로 개칭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임.

2. 주요골자

- 거류면 송산리 「산촌」 행정리 명칭변경 : 「송산」
- 거류면 「용산리 용산1구, 용산2구」 행정리를 통합 : 「용산」

3.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이장 및 관할구역중 거류면 송정리 '산촌'을 '송산'으로 하고, 용산리 이장정원 '2'를 '1'로 하며, '용산1구, 용산2구'를 '용산'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이장및 관할구역 (제2조관련)				【별표】 이장및 관할구역 (제2조관련)			
읍면	리별	정원	관할구역	읍면	리별	정원	관할구역
거류면	송산리	3	송정, 구현, <u>산촌</u>	거류면	송산리	3	송정, 구현, <u>송산</u>
	용산리	<u>2</u>	<u>용산1구, 용산2구</u>		용산리	<u>1</u>	<u>용산</u>